



#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

**건**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지난 5월 7일 대통령령 제18822 호에 의해 일부 개정, 공포되었다.

## □ 주요 개정 내용

### △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재도입(상설화)

- 금융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~50%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(제13조제1항 제1호의2)

### △ 등록기준 중 사무실 재도입(3년 한시)

- 기계설비공사업(20m<sup>2</sup> 이상), 가스시설시공업(제1종) 20m<sup>2</sup> 이상)

### △ 시행일 :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(2005. 6. 8일부터 시행하고,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6월 이내(2005. 12. 7일까지) 동 개정 규정에 적합도록 등록요건 충족

## | 신 · 구조문 대비표 |

현 행	개 정 안
<p><b>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</b></p> <p>제13조(건설업의 등록기준)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 1의2.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(이하 “금융기관 등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[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(입찰보증을 제외한다)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. 금융기관들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</p>	<p><b>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</b></p> <p>제13조(건설업의 등록기준) ①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1의2.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(이하 “금융기관 등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[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(입찰보증을 제외한다)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. 금융기관들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의 재무상태 ·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,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</p> <p>나. 금융기관들은 재무상태 ·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· 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</p> <p>다. 금융기관들은 보증기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기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</p> <p>2.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</p> <p>나. (생 략)</p> <p>다.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(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)이 2년6월 이상인 자</p> <p>3. · 4. (생 략)</p> <p>②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 항제6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 ·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 <p>제16조(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)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</p>	<p>의 재무상태 ·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,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</p> <p>나. 금융기관들은 재무상태 ·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· 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</p> <p>다. 금융기관들은 보증기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기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〈유효기간 만료전의 규정과 같음〉</p> <p>2. _____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.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산업 · 환경설비공사업 _____ 산업 · 환경설비제조업 _____ 환경설비제조업</p> <p>3. ·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</p> <p>1. _____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_____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_____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) ① _____</p>

부 책

- ①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- ② (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) 사무실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  - ③ (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용례)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  - ④ (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